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
서부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박성민

전화 053-570-4390 / 팩스 053-570-4242

보 도 자 료

2020. 5. 19.(화)

제 목	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감염병예방법위반사범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대구서부지청 인권·첨단범죄전담부(부장검사 박성민)는 금일(5. 19.)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조치 중 격리장소를 이탈한 감염병예방법위반사범 4명을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

1 피 고 인

○ A○○(60세, 공공근로)

○ B○○(26세, 무직)

○ C○○(24세, 간호사)

○ D○○(62세, 공공근로)

2 수사 경과

○ ‘20. 5. 1. 대구서부경찰서, A○○ 송치

○ ‘20. 5. 7. 대구성서경찰서, B○○ 송치

○ ‘20. 5. 8. 대구성서경찰서, C○○, D○○ 송치

○ ‘20. 5. 19. 대구서부지청, 피고인들 각 불구속 기소

3 공소사실 요지 [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

○ A○○는 ○○○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'20. 2. 20.부터 자가격리조치되었으나, '20. 2. 21. ~ 28. 총 6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여 직장(공공근로)에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 위반

○ B○○는 ○○○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'20. 2. 20.부터 자가격리조치되었으나, '20. 2. 21. ~ 21. 총 8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여 식당, 카페 등에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 위반

○ C○○는 ○○○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'20. 2. 21.부터 자가격리조치되었으나, '20. 2. 22. 주거지를 이탈하여 직장(○○병원)에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 위반

○ D○○는 중국을 방문했던 확인자와 접촉한 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'20. 2. 29.부터 자가격리조치되었으나, '20. 3. 7. 주거지를 이탈하여 신문배달을 하고 마트에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 위반

※ 코로나19 검사 결과, A○○, B○○, C○○는 양성 판정 후 완치, D○○는 미검사

4 참고 사항

○ 본건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**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을 엄단**한 사안임

○ 대구서부지청은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▨